第116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1年 11月 9日(金) 10時37分
場 所 市民行政委員會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2. 2001年度 行政事務監査 計劃(案) 作成의 件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面
2. 2001年度 行政事務監査 計劃(案) 作成의 件 4面

(10時37分 開議)

○委員長 李憲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의원 세미나 등으로 의원님들 모두가 눈코 뜰 새 없이 매우 바쁘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역주민의 마음을 두루 살펴 그 뜻을 대변하고 진정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이끌어나가고자 늘 노심초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행정에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金賢植 行政管理局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이 들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듯이 며칠 전 찬비와 함께 추위를 몰고 온 입동이 지났습니다. 거리 곳곳에 떨어진 낙엽들 속에서도 이제는 겨울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겨울을 맞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월동기 대책에 만전을 기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12월이 오면 정례회가 다시 시작되고 이를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한해를 모두 마감짓게 됩니다. 두 달여 남짓 남은 2001년도의 마무리를 알차게 하셔서 위원님들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 중 2001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11월 26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의결될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감사를 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서 및 감사자료 제출 요구 등을 준비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훌륭하신 식견을 바탕으로 구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張慶洙 議事擔當主事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議事擔當主事 張慶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1년 10월 26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1년 10월 3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제117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200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張慶洙 議事擔當主事!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조례개정(안) 및 2001년도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으로서 먼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개정(안) 심사를 한 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다루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0時42分)

○委員長 李憲九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金賢植입니다. 평소 종로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와 생활편의 향상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李憲九 委員長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아침 이른 새벽부터 아름다운 종로 가꾸기 사업에 참여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고마움을 표해 올립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산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여성공무원들의 모자건강 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憲九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鄭聖洙 專門委員!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聖洙 專門委員 鄭聖洙입니다.

2001년도 10월 26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모자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의 부담으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에게도 출산을 전후하여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하도록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표준안이 서울시를 경유, 우리 구에 이첩 통보되었습니다. 우리 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4조제2항의 출산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등 모성관련 3개

법이 2001년 8월 14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 개정 공포된 법률안이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 60일이었던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일수가 90일로 늘어나는 등 모성보호 관련조항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여성공무원들에게도 이를 적용, 출산휴가를 연장하도록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표준안이 각 지방단체에 시달되었고 이에 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4조제2항의 출산휴가일수 60일을 90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모성관련 3개 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종로구 여성공무원 근무현황은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鄭聖洙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지금 현재 종로구 여성공무원 현황표를 보니까 일반직 227명, 기능직 103명, 별정직 8명, 계약직 3명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기능직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이 기능직이 많은 것은 주로 단순업무인 주차단속원이나 행정보조 업무 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현재 건설교통국 46명은 전원이 기능직인가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그렇지 않습니다.

○洪起瑞委員 46명 가운데에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기능직이 좀 많습니다.

○洪起瑞委員 일반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 그렇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기능직들이 오랜기간 동안 근무를 하면 일반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어떤 특혜가 있나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현재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서울시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특채 기회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洪起瑞委員 언제부터 중단되었어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중단된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10년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때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우리가 민선 자치시대 이전에는 기능직으로 오래된 그분들을 일반직으로 특채를 하는 시험들이 별도로 있던데 지금 지자제를 하면서부터는 이게 없어진 모양이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아닙니다. 그전에부터 없어졌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직이 227명이고 기능직이 103명인데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여직원들은 기능직이 있습니까? 다 일반직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일부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왜 그러냐 하면 될 수 있는 한 동사무소는 주민하고 접촉하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많이 보충을 하고 단순업무라고 하셨는데 내부에서 하는 업무에는 기능직으로 많이 순환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예, 洪起瑞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金正大委員님! 질의하십시오.

○金正大委員 金正大委員입니다. 관련법규에 보면 말이죠 60일에서 90일로 연장을 해주는 건데 늘어나는 30일에 대해서는 임금이 무급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까? 늘어나는 30일에 대해서 급

료가 없다 무급이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사실입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면 이것은 빛 좋은 감이 아닙니까? 살기 어려운데 30일이라도 더 나와서 더 벌고 싶지 괜히 법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돈도 안 주는데 한푼이라도 벌려면, 괜히 시작만 해놓는 것이 아닙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副議長님! 현재 이러한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를 구의 조례로 하지만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金正大 副議長님! 법은 시간이 나면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30일을 더 줬는데 그러면 60일에서 90일로 연장을 해주니까 여성근로자들이 좋아하는데 결국 돈을 안 주고 출근을 안 하는 한달 동안 전혀 10원도 안 줍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그렇습니다.

○金正大委員 법이 별로 영양가도 없는 법을 만들었네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상에 여자라는 표현을 성 중립적인 개념으로 여성으로 정정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는 계속 여자로 써왔습니까? 여성으로 안 쓰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여자라는 문구가 많습니다.

○金正大委員 11월 1일 이전까지 계속 여자라고 써왔어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金正大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金正大 副議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3分 會議中止)

(10時54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憲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2001年度 市民行政委員會 所管 行政事務監査 計劃(案) 作成의 件

○委員長 李憲九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2001년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洪起瑞 幹事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幹事 洪起瑞 市民行政委員會 幹事 洪起瑞입니다. 200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여 효율적인 행정 통제와 구민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2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이며, 감사대상기관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및 19개 동사무소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반은 李憲九 委員長 외 8인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2001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案)

(市民行政委員會)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憲九 洪起瑞 幹事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東奎委員! 질의하십시오.

○李東奎委員 李東奎委員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들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가장 모순된 부분이 어디가 나왔느냐 하면 동소규모사업 자체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하다시피 해서 동장들이 가지고 있던 권한들이나 업무들이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가져오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이 그것도 없을 뿐더러 예산도 없더란 말이에요. 구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 말은 저희들이 질의할 때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동에서 필요하다면 즉시즉시 내려보내 가지고 시정토록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지금 지켜보니까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그런 것을 다시 내려줘 가지고 동소규모사업은 2,000만원 범위라든가 1,000만원 범위라든가 해가지고 동소규모사업을 즉각즉각 해나갈 수 있도록 지적해주고 예산을 편성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쪽에 대한 자료나 그런 쪽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생각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憲九 위원장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동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여러 면에서 얘기해도 잘 듣지 않고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런 면에서 중점적으로 지적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동장하고 앞으로 소규모사업을 환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이 안 계실 겁니다.

○委員長 李憲九 그리고 동사무소가 축소되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가시면 동장님들 일지를 철저히 점검을 해주시지요.

○李東奎委員 전문위원님도 예산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洪承台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洪承台委員 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마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가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로 분리가 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재무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사실 질의를 하고싶어도 소속이 시민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할 기회가 없습니다. 또 물론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시민행정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질의할 수 없는 이러한 제도상에 사실은 문제점은 있어요. 물론 구정질의에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자체는 결국은 물어볼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동료위원님들이 만일에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재무건설위원회 동료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렵지만 말이죠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느낍니다. 어려운 문제죠. 제도 자체가 이러니까

○委員長 李憲九 어떻습니까? 專門委員님!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안건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과정에서 평소 내가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가서 질의하고 싶단 얘기죠. 물론 동료위원님들에게 의뢰를 해야 되

는데

○專門委員 鄭聖洙 양해를 구하고 거기 가셔서 출석하셔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洪承台委員 제가 재무건설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2건을 올렸어요. 내가 가서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양해를 얻어 가지고

○專門委員 鄭聖洙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속이 다르더라도 질의 같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이면 그것만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시간이 되면 그때 담당부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시간을 양해를 구해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표결 같은 데 참여할 수 없어도 질의 같은 것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1월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1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散會를 선포합니다.

(11時05分 散會)

○出席委員 9人

李憲九　洪起瑞　鄭泰淳　千相旭
洪承台　朴鍾植　李東奎　金正大
宣相善

○出席專門委員

鄭聖洙

○出席關係公務員

行政管理局長　金賢植